

# 경운대학교 KUST센터운영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 및 위치)** 센터는「경운대학교 KUST Center」라 칭하며, 경운대학교(이하“우리대학”)이라 한다) 내에 둔다.

**제2조(목적)** KUST Center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사업 및 조직

**제3조(사업)** 센터는 심폐소생술전문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심폐소생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의료인의 심폐소생술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일반인의 심폐소생술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재난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우리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 심폐소생술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그 밖의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

**제4조(조직)**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코디네이터 1명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우리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센터를 대표한다. 코디네이터는 간호학과 소속교수 또는 행정조교 중에서 센터장이 선임한다.

## 제3장 교육과정

**제5조(교육과정 개설)** 센터는 아래 각 호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 한다.

1. 응급 교육과정
  - 1) 의료인 BLS Provider 과정(AHA/미국)
  - 2) ACLS Provider 과정(AHA/미국)
  - 3) KALS Provider 과정 (KACPR/대한민국)
  - 4) 일반인 심폐소생술 과정 (KACPR/대한민국)

- 5) 일반인 심폐소생술 강사과정 (KACPR/대한민국)
2. 재난 교육과정
  - 1)국가재난전문가 기초 교육과정(BDLS Course)(NDLSF/미국)
3. 공공기관 및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및 그 밖의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과정
4. 그 외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

**제6조(교육과정 운영)** 각 교육과정은“대한심폐소생협회”운영 지침 및 자체 운영규정을 따른다.

**제7조(등록 및 수강)** 등록 및 수강은 각 교육과정별 일정에 따라 정한다.

**제8조(수강료 등)** 본원의 각 교육과정별로 수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는데 수강료는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비 기준 및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정한다.

**제9조(수강료 반환)** 센터의 사정 또는 수강생의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교육 시작 일 10일 전에 취소 시 전액을 반환하고, 교육당일에 불참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.

**제10조(이수증 수여)** “대한심폐소생협회”이수증은 수료생 개인이 대한심폐소생협회에 신청하여 발급받는다.

## 제4장 재정과 회계

**제11조(재정)** 센터의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우리대학에서 교육비, 교비, 기부금 및 보조금, 연구사업의 수익금,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**제12조(회계운영)** 센터의 수강료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.

**제13조(회계년도)** 센터의 회계업무는 우리대학 예산회계업무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4조(강사료)** 강사료는 이론강의는 시간당 15만원, 실습은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한다.

**제15조(보칙)**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